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4년 5월 1일(수)까지** 우리처(축산물안전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전자관보('24.3.22.字) 및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4-144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식품정책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위생과장),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검사과장),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방역과장),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한국수입육협회, 한국양육협회, (사)전국 식육부산물전문상회,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본부,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사단법인 한국계란산업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한국유가공협회, (사)한국육계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사)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축산물위생교육원장,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단법인 한국수입육협회, 한국식육운송협회, 한국난가공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주무관	식품위생사무	과장	전결 2024. 3. 22.
남경우	관 이성규	김성일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2185 (2024. 3. 2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축산물안전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247	팩스번호 043-719-3270	/ nkw98@korea.kr	/ 비공개(5)